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25-21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3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- 장애인 안심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제시
- “장애인, 보호자, 생활 안심보험” 용어 정의

나. 보험 대상자 및 보험가입(안 제3조~제4조)

- 발달장애인, 장애청소년으로 적용범위 규정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 근거 마련 및 보험회사 선정 방식 규정

다. 보험료 납부, 보험의 보장내용(안 제5조~제6조)

- 보험료 납부 방법, 보험의 보장내용 규정

라. 보험금 청구, 보험금 지원 제외(안 제7조~제8조)

- 보험금 청구 방법 및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 명시

3. 주요 토의과제

-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안심보험 가입 근거 마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장애인복지법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고(구비 100% 지원)

다. 합 의 :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제외 대상

※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/피해보상/구조지원사업 등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5. 1. 9. ~ 2025. 1. 29.(제출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개선권고(수용)

감사담당관 부패영향 결과	보험가입 대상자를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선하고,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 마련
반영내용	보험가입 대상자를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선하고,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 마련을 위해 해당 조문 삭제
삭제조항	제3조(보험 대상자) 1:2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장애인</u>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5) 2025년 제2회 서울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(2025. 2. 27.)

※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법정대리인, 후견인 또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보험”이란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.

제3조(보험 대상자) 이 조례의 보험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
2. 장애인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장애청소년

제4조(보험 가입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5조(보험료 납부)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.

제6조(보험의 보장내용 등) 보험은 상해 및 배상책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며 보험의 보장기간, 보험료,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.

제7조(보험금 청구 등)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. 다만, 피보험자가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.

제8조(보험금 지원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·군·구로 전출한 경우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
3.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추계 요약

가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비용발생 요인: 제6조(보험료 납부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비용추계기간: 2025. 1. ~ 2029. 12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구비	68,500	70,000	71,500	73,000	74,500	357,500
	소계(b)	68,500	70,000	71,500	73,000	74,500	357,500
□ 총 비용(a-b)		68,500	70,000	71,500	73,000	74,500	357,500

- 1인 보험료 평균 50천원 / 연평균 30명 증가 산출액

- 비용 : 보험료 및 홍보비

4. 재원조달 방안 : 구비 100%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				
시비							
구비		68,500	70,000	71,500	73,000	74,500	357,500
합계		68,500	70,000	71,500	73,000	74,500	357,500

5. 덧붙이는 의견 :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
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김문찬 (☎ 02-3153-1683)